

##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58호

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9월 17일

임실군의회의회장



### 1. 제정이유

오수면 의견로 3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사업,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9월 21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- 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- 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- 3) 전자우편: [charity81@korea.kr](mailto:charity81@korea.kr)

### 4. 제정안: 붙임

##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세계명견 테마랜드”란 오수면 의견로 3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지를 말한다.
2. “주변지역”이라 함은 “세계명견 테마랜드”가 속한 행정리·통으로서 관광지에 인접하는 지역으로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주변지역의 지정)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·고시 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을 결정·고시 하려면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
2. 주민 복지 증진 사업
3. 그 밖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다.

② 지원액,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.

1.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여부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주변지역 결정
2.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임실군의회 의원
2.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
3. 관광분야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

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) ①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의 주민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안된 사업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,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③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

### 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##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
- 다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**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**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 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

2. 시·군 및 자치구

제1호에서 시·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. 다만,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.

□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

**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**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10조제1항 관련)

구 분	시·도 사무	시·군·자치구 사무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	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.	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		

<p>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</p>	<p>1)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) 시·군·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·조정·지도 및 조연</p>	<p>1)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2) 시·군·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·지원 3) 주민복지 상담 4)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</p>
<p>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</p> <p>자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</p> <p>타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</p>	<p>1)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)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와 보급 3)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) 지역 내 기업의 정보,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) 지역산품전시회 개최와 구매자 유치 지원 6)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7)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</p> <p>1)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 계획 수립·조정 2)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)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)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</p>	<p>1)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)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·유지와 보급 3) 지역 내 기업의 정보·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)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)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)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</p> <p>1) 시·군·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·시행 2)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)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·지원 4)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</p>